

2021년 제1회 남양주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남양주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7월 27일
남 양 주 시 장

1.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분 야	선발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청원경찰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 방호를 위한 출입통제 및 주·야간 순찰■ 청사내외 질서유지 및 이용자 안내■ 기타 시설 방호 및 경비와 관련된 사항	청사 등 관내 시설장

2. 응시자격 (가~마 항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응시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거주지 제한**

○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신체조건**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시험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거주지 요건, 연령, 병역사항 등 적격여부 서면심사
 나. 2차 필기시험 : 시설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평가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고
일반상식	20문제	40분 (10:00~10:40)	- 과목 당 100점 만점 - 4지 1택형
민간경비론	20문제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다. 3차 면접시험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평정요소】

- | | |
|-------------------|----------------|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결정
-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에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8. 9.(월) ~ 8. 11.(수) 09:00 ~ 18:00 / 3일간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총무과 인사기획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p>□ 등기우편접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봉투 겉면에 '남양주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번호를 이메일 또는 SMS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본인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 <p>▶ 접수처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총무과 인사기획팀</p> <p>▶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31-590-2126)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p>

나. 시험일정(예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서면심사	서면심사	8. 18.(수)
필기시험	8. 18.(수)	9. 4.(토)	9. 9.(목)
면접시험	9. 9.(목)	9. 14.(화) ~ 9. 16.(목) 중	9. 17.(금)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모집공고 게시판에 공고 예정

5. 가산점 적용

가.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 대상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¹⁾	취업지원대상자	▶ <u>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u> (단,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²⁾	태권도, 유도 등 2단 이상	▶ <u>과목별 만점의 3%</u>	중복적용 불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 <u>과목별 만점의 3%</u>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1577-0606)
- 2)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등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별첨1) (2021년 경찰(순경)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준용)

나.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전일 18시까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6. 제출서류

<스테플러 사용금지하며,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가산점 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인 무도단증·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서식 사용

7. 보수 및 복무

가. 보 수 : 기본급(호봉제), 수당(공무원 수당 준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표 기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복 무

-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의 요구 시 반환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신체조건이 부적격하거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기획팀 (☎031-590-2126)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